

서울시설공단과 세종사이버대학교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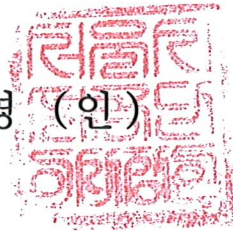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2023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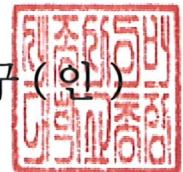
서울시설공단

세종사이버대학교

이사장 한국영 (인)



총장 신구 (인)



서울시설공단(이하 '산업체')과 세종사이버대학교(이하 '세종')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산업체'의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세종'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에 있다.

제2조(위탁교육의 과정과 모집 인원)

1. 위탁교육의 과정은 학사학위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
2. 위탁교육의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세종'의 위탁전형 모집정원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3조(위탁생의 자격)

1. 신입학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4년제 대학교 1년 또는 2년 이상 수료자는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2. 기타 신입생 및 편입생의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제적)

1. 위탁생은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중에서 위탁생으로 지원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2. '세종'은 위탁생으로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3.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교육부의 지침을 근거로 하여 '세종' 및 '산업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위탁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

1. 본 협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세종'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2.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6조['산업체'의 시설사용]

'산업체'의 시설사용 합의가 있을 때에는 본 협약서를 시설사용합의서의 별표로 첨부한다.

제7조['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와 합의하여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임명)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 및 등록)

1.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의 학생 등록금 수준으로 하되, '산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산업체' 임직원이 '세종'의 학부 과정에 입학 시, '세종'은 전형료 전액감면과 정규학기 수업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제9조(위탁생의 신분)

1.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세종'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세종'은 일반 재학생에 제공하는 모든 학생 서비스를 위탁생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제10조(홍보 협조)

'세종'과 '산업체'는 협약내용의 사내공지 등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방법은 각 기관에 위임한다.

제11조 ('세종'의 '산업체'에 대한 위탁생 정보 제공)

1. '세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위탁생에게서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산업체'의 요청이 있을시 제공한다.
2. '산업체'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 및 제 3자 제공을 금한다.

제12조(위탁교육협력위원회)

1. '세종'과 '산업체'는 약정에 의거 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시 그 조직과 구성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2. 제 1항에 따라 정한 동 위원회의 기능 등 소관사항을 위원회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1. 어느 일방이라도 협약의 존속 기간 중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재학 중인 자에 한해서는 졸업 시까지 제8조의 효력을 유지한다.

제14조(비밀유지)

1. '세종'과 '산업체'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이는 협약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2.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기타)

1.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2. 위탁교육 시행에 따른 업무진행에 있어서 '세종'과 '산업체'는 상호간의 협의사항을 존중하고, 분쟁 발생 시 상호협의 하에 문제해결을 한다.
3.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본 협약서에 따른 모든 약정사항은 2부 작성하여 '세종'과 '산업체' 상호간에 1부씩 보관한다.